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도시철도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일치시키는 한편, 「산림조합법」 전부개정(법률 제6187호, 2000. 1. 21. 공포, 2000. 5. 1. 시행)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법률 제9276호, 2006. 12. 29. 공포, 2009. 6. 30.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와”를 “별표1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매입확인증징구의무자”를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입필증징구의무자”를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매입확인증징구의무자”를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로 한다.

5.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매입확인증징구의무자”를 각각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매입확인증의 징구)”를 “(매입확인증의 접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입확인증징구의무자”를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로, “징구하여야”를 “제출받아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징구한다”를 각각 “제출받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입확인증징구의무자가 매입확인증을 징구하였”을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가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았”으로, “징구대장”을 “접수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매입확인증

징구의무자는 매입확인증을 징구한”을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은”으로, “징구일”을 “제출받은 날”로 한다.

별표 1의 대상자의 구분란 2.의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대상자의 범위란 제28호 및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8.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별표 1의 대상자의 구분란 3.의 “따른”을 “따라 설립된”으로 한다.

별표 1의 대상자의 구분란 4.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차관을 도입한 차관기업체”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한다.

별표 1의 대상자의 구분란 6.의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을 “「정당법」에 따라”로 한다.

별표 1의 대상자의 구분란 7.의 “대중교통수단에 제공되는 시내버스의 운송사업자”를 “대중교통수단에 사용되는 시내버스·마을버스 및 농어촌버스의 운송사업자”로 하고, 대상자의 범위란 제1호의 “대중교통수단에 제공되는 시내버스의 운송사업자”를 “대중교통수단에 사용되는 시내버스·마을버스 및 농어촌버스의 운송사업자”로 하고, 면제항목란 제1호의 “시내버스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을 “시내버스·마을버스 및 농어촌버스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으로 하고, 면제대상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란 제1호의 “시내버스운송사업용”을 “시내버스·마을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용”으로 한다.

별표 1의 대상자의 구분란 9.의 “영위하는 자가”를 “하는 자로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징구”를 “접수”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징구기관”을 각각 “접수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징구기관”을 “접수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징구기관”을 “접수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징구”를 “접수”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제목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징구대장”을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접수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징구”를 “접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채권매입의무일부면제대상 자 및 그 면제대상항목) ① 영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나목에 따라 채권매입의무가 일부면제 되는 대상자의 범위, 면제대상 항목 및 제출서류는 <u>별표와</u> 같 다.		제5조(채권매입의무일부면제대상 자 및 그 면제대상항목) ① --- ----- ----- ----- ----- <u>별표1과</u> -- --.		
②채권매입의무의 일부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 신청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 <u>매입</u> <u>확인증징구의무자</u> ”라 한다)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u>매입</u> <u>확인증을</u> 제출받는 자----- -----.		
③ <u>매입필증징구의무자</u> 가 제2항 에 따른 일부면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신청인과 면제신청 항목이 별표 1에 규정된 면제대 상자와 면제대상항목에 해당되 는 때에는 채권의 매입을 면제 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 부면제자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u>매입확인증을</u> 제출받는 자-- ----- ----- ----- ----- ----- ----- ----- -----.		

제6조(매입확인증의 발급) ① (생략)

②매입확인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무취급기관의 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매입확인증징구의무자

③ (생략)

④매입확인증은 그 매입확인증에 기재된 매입자·매입목적 및 매입확인증징구의무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7조(매입확인증의 재발급) ①

채권의 매입자는 매입확인증을 멸실하거나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매입확인증징구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제6조(매입확인증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

③ (현행과 같음)

④-----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
-----.

⑤·⑥ (현행과 같음)

제7조(매입확인증의 재발급) ① -

----- 매입확인증을 제출
받는 자-----

야 한다.

② 매입확인증징구의무자는 제 1항에 따라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 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 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 발급대장에 증명서 발급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8조(매입확인증의 징구) ①매입 확인증징구의무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1.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 는 경우 : 해당 면허증·허가 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 에 매입확인증을 징구한다.
2.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 해당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매입확 인증을 징구한다.
3. 건설공사도급계약·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 : 해당 건설공사도급 계약·용역계약 또는 물품구 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매입확

-----.

②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매입확인증의 접수) ①매입 확인증을 제출받는 자-----

제출받아야 ----.

1. -----

----- 제출받는다.
2. -----

----- 제출받는다.
3. -----

인증을 징구한다. 다만, 공사
기간이 2년이상인 건설공사나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때에 매입확인증(대금을 분할
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
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확인증)
을 징구한다.

②매입확인증징구의무자가 매
입확인증을 징구하였을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소인(消印)의 표
시를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징구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매입확인증징구의무자는 매
입확인증을 징구한 경우에는 그
징구일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사무취
급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
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출받는다. -----

-- 제출받는다.

②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가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았-----

접수대장-----

1. ~ 4. (현행과 같음)

③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은 -----
제출받은 날-----

**[별표1]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의 일부
면제대상자의 범위 및 그 면제항목**

대상자의 구분	대상자의 범위	면제항목	면제대상자임을 확인받고
------------	------------	------	-----------------

**[별표1]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의 일부
면제대상자의 범위 및 그 면제항목**

대상자의 구분	대상자의 범위	면제항목	면제대상자임을 확인받고
------------	------------	------	-----------------

			자 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
1. 생략 2. 경제개발 또는 공익 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 립된 법인 과 그 소속 단체	1.~3. 생략 1. 상공회의소 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와 대한상 공회의소 2.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 중소기업 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3.~27. 생략 28. <u>임업협동 조합법에 의한 임업 협동조합 과 임업협 동조합중 앙회</u> 29. <u>농지개발 조합법에 의한 농지 개발조합</u> 30.~54. 생략	1.~2. 생략 1. 삭제 <200 9.7.2> 2. 삭제 <2009. 7.2> 3. 「조세특례 제한법」 등 또는 「지 방세법」 등 에 따라 등 록세가 면 제되는 등 록 4.~6. 생략	1.~3. 생략 1. 등록 또는 등기 목적 물을 업무 용으로 취 득하는 것 임을 주무 부장관이 확인하는 서류(면제 항목중 제1 호의 경우 에 한한다) 2. 생략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 리법인으 로서 국고 보조 또는 지방비의 보조를 받 는 법인	해당 연도 현 재 국고보조 또는 지방비 보조를 받고 있는 비영리 법인	「조세특례 제한법」 또 는 「지방세 법」 등에 따 라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 록	해당 연도 현 재 국고보조 또는 지방비 보조를 받고 있음을 주무 부장관이 확 인하는 서류
4. 「외국인 투자 촉진 법」	「외국인 투 자 촉진법」	1. 비사업용 자동차의	1. 주무부장 관이 발행

			자 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
1. 생략 2. 경제개발 또는 공익 을 목적으 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 립된 법인 과 그 소속 단체	1.~3. 생략 1. 상공회의소 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와 대한상 공회의소 2.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 중소기업 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3.~27. 생략 28. <u>산림조합 법에 따른 산림조합 과 산림조 합중앙회</u> 29. <u>한국농어 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따른 한국 농어촌공 사</u> 30.~54. 생략	1.~2. 생략 1. 삭제 <2009. 7.2> 2. 삭제 <2009. 7.2> 3. 「조세특례 제한법」 등 또는 「지 방세법」 등 에 따라 등 록세가 면 제되는 등 록 4.~6. 생략	1.~3. 생략 1. 등록 또는 등기 목적 물을 업무 용으로 취 득하는 것 임을 주무 부장관이 확인하는 서류(면제 항목중 제1 호의 경우 에 한한다) 2. 생략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 리법인으 로서 국고보 조 또는 지 방비의 보 조를 받는	해당 연도 현 재 국고보조 또는 지방비 보조를 받고 있는 비영리 법인	「조세특례 제한법」 또 는 「지방세 법」 등에 따 라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 록	해당 연도 현 재 국고보조 또는 지방비 보조를 받고 있음을 주무 부장관이 확 인하는 서류

<u>법」에 따라</u> <u>른 외국인</u> <u>투자기업</u> <u>또는 차관</u> <u>을 도입한</u> <u>차관기업</u> <u>체</u>	에 따라 인가 를 받은 외국 인 투 자 기 업 으로서 외국 인 투 자 인 가 일부터 3년 이내인 기업 체	신규등록 또는 이전 등록 2. 관광숙박 업(관광 사업법의 적용을 받 는 숙박 업)의 신 규등록 및 명의변경	하는 외국 인투자인 가서의 사 본 2. 법인등기 부등본
5. 언론기관	1.~5. 생략	1.~2. 생략	1.~2. 생략
6. <u>정당법의</u>	정당법에 의	1. 비사업용	정당등록증
<u>규정에 의</u>	한 정당	자동차의	의 사본
<u>하에 설립</u>		신규등록	
된 정당		또는 이전	
		등록	
		2. 조세감면규	
		제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	
		록세가 면	
		제되는 등	
		기 또는 등	
		록	
7. <u>대중교통</u>	1. <u>대중교통</u>	1. <u> 시내버스</u>	1. 각 시·도
<u>수단에 제</u>	<u>수단에 제</u>	<u>신규등록</u>	<u>지사가 시</u>
<u>공되는 시</u>	<u>공되는 시</u>	<u>및 이전등</u>	<u>내버스운</u>
<u>내버스의</u>	<u>내버스의</u>	<u>록(대상자</u>	<u>송사업용</u>
<u>운송사업</u>	<u>운송사업</u>	<u>의 범위중</u>	<u>으로 취득</u>
<u>자와 주택</u>	<u>자</u>	<u>제1호의 자</u>	<u>하는 것임</u>
<u>건설을 목</u>	<u>2. 주택건설</u>	<u>에 한한다)</u>	<u>을 증명하</u>
<u>적으로 토</u>	<u>을 목적으</u>	<u>2. 다음 각목</u>	<u>는 서류</u>
<u>지형질변</u>	<u>로 토지형</u>	<u>의 1에 해</u>	<u>(대상자의</u>
<u>경허가를</u>	<u>질변경허</u>	<u>당되는 토</u>	<u>범위중 제</u>
<u>신청하는</u>	<u>가를 신청</u>	<u>지형질변경</u>	<u>1호의 자</u>

법인 4. 「<u>외국인</u> <u>투자 촉진</u> <u>법」 제2조</u> <u>제1항제6</u> <u>호에 따른</u> <u>외국인 투</u> <u>자기업</u>	「외국인 투 자 촉진법」 에 따라 인가 를 받은 외국 인 투 자 기 업 으로서 외국 인 투 자 인 가 일부터 3년 이내인 기업 체	1. 비사업용 자동차의 신규등록 또는 이전 등록 2. 관광숙박 업(관광 사업법의 적용을 받 는 숙박 업)의 신 규등록 및 명의변경	1. 주무부장 관이 발행 하는 외국 인투자인 가서의 사 본 2. 법인등기 부등본
5. 언론기관	1.~5. 생략	1.~2. 생략	1.~2. 생략
6. 「 <u>정당</u>	정당법에 의	1. 비사업용	정당등록증
<u>법」에 따</u>	한 정당	자동차의	의 사본
<u>라 설립된</u>		신규등록	
정당		또는 이전	
		등록	
		2. 조세감면규	
		제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	
		록세가 면	
		제되는 등	
		기 또는 등	
		록	
7. <u>대중교통</u>	1. <u>대중교통</u>	1. <u> 시내버스</u>	1. 각 시·도
<u>수단에 사</u>	<u>수단에 사</u>	<u>·마을버</u>	<u>지사가 시</u>
<u>용되는 시</u>	<u>용되는 시</u>	<u>스 및 농</u>	<u>내버스·</u>
<u>내버스·</u>	<u>내버스·</u>	<u>이촌버스</u>	<u>마을버스</u>
<u>마을버스</u>	<u>마을버스</u>	<u>신규등록</u>	<u>및 농이촌</u>
<u>및 농이촌</u>	<u>및 농이촌</u>	<u>및 이전등</u>	<u>버스 운송</u>
<u>버스의 운</u>	<u>버스의 운</u>	<u>록(대상자</u>	<u>사업용으</u>
<u>송사업자</u>	<u>송사업자</u>	<u>의 범위중</u>	<u>로 취득하</u>
와 주택건	2. 주택건설	제1호의 자	<u>는 것임</u>

자	하는 자	허가(대상 자의 범위 중 제2호의 자에 한한 다) 가~나 생략	에 한한 다) 2. 생략
8. 생략	1.~2. 생략	1.~2. 생략	1.~2. 생략
9. 제조업· 광업·건설업·운 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1 년 이상 사용한 사 업용 자산 을 현물출 자하여 법 인을 설립 하기 위하 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조세 특례제한 법」 제32 조에 따른 양도소득 세의 이월 과세를 적 용받는 자 만 해당한 다)	개인기업자 가 해당 사업 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 용 자산을 현 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 하기 위하여 「상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는 회 사	1. 법인설립 에 따른 등록 2. 해당 회사 가 개인기 업으로부 터 승계한 자동차의 이전등록	1. 개인기업 을 1년 이 상 영위하 였음을 증 명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2. 법인전환 의 내용이 포함된 주 주총회의 회의록사 본(발기 설립의 경 우에는 감 사인의 선 임 및 감 사인의 설 립경과조 사서 사 본) 3. 해당 자동 차가 법인 전환으로 소멸된 개 인기업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등록원부

설을 목적 으로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신 청하는 자	을 목적 으로 토 지형질변 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에 한한다) 2. 다음 각목 의 1에 해 당되는 토 지형질변경 허가(대상 자의 범위 중 제2호의 자에 한한 다) 가~나 생략	증명하는 서류(대상 자의 범위 중 제1호 의 자에 한 한다) 2. 생략
8. 생략	1.~2. 생략	1.~2. 생략	1.~2. 생략
9. 제조업· 광업·건설업·운 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1 년 이상 사용한 사 업용 자산 을 현물출 자하여 법 인을 설립 하기 위하 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조세 특례제한 법」 제32 조에 따른 양도소득 세의 이월 과세를 적	개인기업자 가 해당 사업 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 용 자산을 현 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 하기 위하여 「상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는 회 사	1. 법인설립 에 따른 등록 2. 해당 회사 가 개인기 업으로부 터 승계한 자동차의 이전등록	1. 개인기업 을 1년 이 상 영위하 였음을 증 명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2. 법인전환 의 내용이 포함된 주 주총회의 회의록사 본(발기 설립의 경 우에는 감 사인의 선 임 및 감 사인의 설 립경과조 사서 사 본) 3. 해당 자동 차가 법인 전환으로

			등본
--	--	--	----

용받는 자 만 해당한 다)			소멸된 개 인기업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등록원부 등본
----------------------	--	--	---

**[별지3]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발행
대장**

**[별지3]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발행
대장**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발행대장							
일 번	신청인(매입자)		채권 및 매입확인증			매입 목적	징구 기관
	성명	주소	채권 종류 별	기호 및 번호	매입 금액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발행대장							
일 번	신청인(매입자)		채권 및 매입확인증			매입 목적	징구 기관
	성명	주소	채권 종류 별	기호 및 번호	매입 금액		

**[별지4]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기재
사항 정정신청서**

**[별지4]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기재
사항 정정신청서**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내용	채권 기호 및 번호	채권 금액
	매입자 성명	매입자 성명
	매입목적	매입목적
	징구기관	징구기관
	발행일자	발행일자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서명 또는 인)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내용	채권 기호 및 번호	채권 금액
	매입자 성명	매입자 성명
	매입목적	매입목적
	징구기관	징구기관
	발행일자	발행일자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서명 또는 인)

청 인 사무취급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매입확인증 1부	수수료 없음

[별지5] 도시철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앞쪽)				
접수 번호		처리 기간	1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내 용	기호 및 번호(채권 종류별)			
	매입금액			
	매입목적			
	징구기관			
	발행점포			
	발행일자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청 인 사무취급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매입확인증 1부	수수료 없음

[별지5] 도시철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앞쪽)				
접수 번호		처리 기간	1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내 용	기호 및 번호(채권 종류별)			
	매입금액			
	매입목적			
	접수기관			
	발행점포			
	발행일자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사무취급기관의
귀하
장

첨부서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	수수료
류	서 1부	없음

[별지6]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
(앞쪽)

접수번호		처리기간	1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내용	기호 및 번호(채권 종류별)
	매입금액
	매입목적
	징구기관
	발행점포
	발행일자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 기재사항의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	분실공고문 1부	수수료
-----	----------	-----

사무취급기관의
귀하
장

첨부서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	수수료
류	서 1부	없음

[별지6]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
(앞쪽)

접수번호		처리기간	1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내용	기호 및 번호(채권 종류별)
	매입금액
	매입목적
	접수기관
	발행점포
	발행일자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 기재사항의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	분실공고문 1부	수수료
-----	----------	-----

류		없음
---	--	----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별지8]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 대장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

신청인(매입자)		채권 및 매입확인증			매 입 금 액	조 기 관
성 명	주소	채권 종류 별	기호 및 번호	매 입 금 액		

[별지9]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징구 대장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징구대장

신청인(매입자)		채권 및 매입확인증			매 입 금 액	징 구 일 목 지 적
성명	주소	기호 및 번호	매 입 금 액	징 구 일 목 지 적		

류		없음
---	--	----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별지8]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 대장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

신청인(매입자)		채권 및 매입확인증			매 입 금 액	조 기 관
성 명	주소	채권 종류 별	기호 및 번호	매 입 금 액		

[별지9]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접수 대장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접수대장

신청인(매입자)		채권 및 매입확인증			매 입 금 액	접 수 일 목 지 적
성명	주소	기호 및 번호	매 입 금 액	접 수 일 목 지 적		